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969

발의연월일: 2022. 3. 25.

발 의 자:김태년 · 이상헌 · 임호선

이학영 · 김영배 · 김경협

고영인 · 김교흥 · 허 영

홍성국 · 홍정민 · 윤준병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수당은 1994년에 결정된 이후로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음. 선거사무관계자 등은 선거기간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전면 지원함에도 불구하고,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수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음.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수당을 현실화 하고, 그 인상된 금액만큼 공직선거의 후보자별 선거비용제한액을 상향하려는 것임.

또한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선거 운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음. 이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산 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, 산재보험 납부액에 상당하는 비용 만큼을 공 직선거 후보자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고자 하려는 것임(안 제121 조제3항 신설). 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2조제5항 중 "補佐官·秘書官·秘書"를 "보좌관·선임비서관·비서 관"으로 한다.

제1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35조에 따른 선거사무장·선거연락소장·선거사무원·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(이하 이 항에서 "선거사무장등"이라 한다)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산재보험 납부액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여야 하며,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이 인상된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기간과 선거사무장등의 수(선거사무원의 경우에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선거별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최대수를 말한다)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여야 한다.

제135조제1항 단서 중 "보좌관·비서관·비서"를 "보좌관·선임비서관·비서관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선거사무장등의 수당 인상 차액의 산정 기준에 관한 특례) 제12 1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이 인상된 경우에 그 차액의 산정은 2021년 1월 1일 현재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선거사무장등의 수당을 기준으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第62條(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) | 第62條(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) ① ~ ④ (생 략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第13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| 의하여 手當을 지급받을 수 없 는 政黨의 有給事務職員, 國會 議員과 ユ 補佐官・秘書官・秘 -----보좌관·선임비서관 ·비서관-----書 또는 地方議會議員은 選舉 事務員이 된 경우에도 第2項의 選擧事務員數에는 산입하지 아 니한다. ⑥ ~ ⑧ (생 략) ⑥ ~ ⑧ (현행과 같음) 제121조(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) 제121조(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) ① • ② (생 략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③ 제135조에 따른 선거사무장 ·선거연락소장·선거사무원·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(이 하 이 항에서 "선거사무장등" 이라 한다)가 산재보험에 가입 할 경우에는 산재보험 납부액 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 정한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 여야 하며,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이 인상된

③ (생 략)

제135조(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저수당과 실비보상)

①선거사무장·선거연락소장·선거사무원·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(이하 이 조에서 "선거사무장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있다. 다만, 정당의 유급사무직원,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·비선관·비선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,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

	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 선거
	의 선거운동기간과 선거사무장
	등의 수(선거사무원의 경우에
	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선거별
	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
	소장이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
	의 최대수를 말한다)를 곱하여
	산정한 금액을 제1항 및 제2항
	에 따라 산정한 선거비용제한
	액에 가산하여야 한다.
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1	135조(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
	수당과 실비보상)
	①
	<u>보좌관·선임</u>

비서관 • 비서관 -----

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	수	
없다.		